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2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김예지·강기윤·김용판

이종배 • 김선교 • 김성원

서범수・이종성・최형두

배현진 · 이주환 의원

(11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음.

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, 고등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(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"를 "교육부렁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

행 이후 학생선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	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-
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	
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"최저학	
럭"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	
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	교육부령으로 정하
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	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
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	<u>서는 아니 된다</u> . <u>다만, 「초・중</u>
력하여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경	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
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.	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
<u><단서 신설></u>	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
	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
	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
	를 허용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
	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
	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
	제공하여야 한다.
<u>②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⑦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